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혜기업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연 노력 의무 부과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82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심사경과 등	3
1. 제21대 국회 심사경과	3
2. 제22대 국회 연계 법률 발의 현황	3
IV. 조문 별 검토의견	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수혜기업에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 출연 노력 의무 부과	6
2.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목표액 보다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입	17
3. 재단 등에 수혜기업별 할당액을 정해 출연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3
4. 매년 1천억원 조성 목표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	3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4.
3. 회 부 일 : 2024. 10.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후 8년째인 올해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449억원으로,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 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음. 전체 조성금액 중 공공기관(134곳)이 조성한 기금액은 1,495억원으로 전체 61.0%에 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기업(208곳)은 946억원(38.6%)를 납부한 것에 그치고 있음.

특히 민간기업 중 재계서열 1위인 삼성그룹의 경우 작년 한 해의

매출액은 358조원을 넘었지만, 정작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출연조차 하지 않았고, 그 이후인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고작 86억원(0.002%)에 불과했음. 삼성그룹을 비롯해 SK·현대자동차·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농협 등 재계서열 1위~10위까지의 그룹이 같은 기간 출연한 금액 역시 작년 매출액 대비 0.003%인 470억원에 불과함. 이에 농어민들의 희생으로 성장 재벌그룹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이 농어민과의 상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액을 매년 1천억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게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당해 연도 조성 목표액에서 출연된 금액을 제한 부족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하도록 함.

또한 재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혜기업 대표 단체 또는 협회는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 협조 및 지원 요청 등 출연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제8항 신설 등).

Ⅲ. 심사경과 등

1. 제21대 국회 심사경과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3건)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안(제2100072호), 정운천의원안(제2101886호) 및 (제2103875호)] 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되었으나(2020.09.22),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연번	제안자	주요내용	심사진행상태
	제안일		
	의안번호		
1	김승남의원	·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의 상생기금 조성 참여 의무화 ·상생기금을 매년 1천억원씩 20년간 조성	법안소위심사 (‘20.9.22.)
	‘20.6.3.		
	2100072		
2	정운천	·상생기금 재원조성에 정부출연 근거 마련 ·재단은 민간기업등에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농식품부에 보고 ·정부는 상생기금 조성액 부족분을 출연(직전회계연도 관세징수액의 100분의 1 기준)하고 농해수위 보고	법안소위심사 (‘20.9.22.)
	‘20.7.14.		
	2101886		
3	정운천	·정부는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업상생협력재단” 설립 ·재단은 ①협력사업 개발 및 운영 ② 농어촌상생기금 관리·운용 ③농식품부장관 지정·위탁사업을 수행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시발의	법안소위심사 (‘20.9.22.)
	‘20.9.14		
	2103875		

나. 연계 법률

제21대 국회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안, 제2103874호)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안, 제2106472호)이 발의되었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1건)

연번	제안자	주요내용	심사진행상태
	제안일		
	의안번호		
1	정운천의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업무를 별도의 재단으로 이관하고 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업무를 삭제	산자위 법안소위원회부 (20.11.26)
	'20.9.14		
	2103874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1건)

연번	제안자	주요내용	심사진행상태
	제안일		
	의안번호		
1	정운천의원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	행안위 법안소위원회부 (21.2.17)
	'20.12.15		
	2106472		

2. 제22대 국회 연계 법률 발의 현황

개정안과 관계된 연계법안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안, 제2204892호)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안, 제2204884호)가 발의되어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임.

제명	제안자	주요내용	심사진행상태
	제안일		
	의안번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	위원회 회부 (‘24.10.25.) 행안위
	‘24.10.24		
	22048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상생기금 출연 시 법인세 공제 비율상향 (10%→50%) ·일몰기간 연장(2025.12.31.→2030.12.31.)	법안소위상정 (‘24.11.22.)
	‘24.10.24		
	2204884		

IV. 조문별 검토의견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수혜기업에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 출연 노력 의무 부과(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개정안은 협정 체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하 ‘수혜기업’)에 대하여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출 여건의 변화 등 대내외적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출연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생략) <u><신설></u>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협정 체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하 “수혜기업”이라 한다)은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여건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출연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기업 이익에서 FTA 체결에 따른 이익만을 따로 측정하는 것이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수혜기업’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산업통상자원부통상부

- ☐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정 체결에 따라 수혜를 받는 기업을 특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수혜기업에 대해 기금 출연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출연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규정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재산권 침해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검토의견

- ☐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ASEAN, 유럽연합(EU), 미국, 영연방과 중국 등 총 59개국 21건의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¹⁾를 체결하였음.

【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

연번	상대국	추진 현황			의의
		협상개시	서명	발효	
1	칠레	1999.12.	2003.2.	2004.4.	최초의 FTA, 중남미시장의 교두보
2	싱가포르	2004.1.	2005.8.	2006.3.	ASEAN 시장 교두보
3	EFTA (4개국)	2005.1.	2005.12.	2006.9.	유럽시장 교두보
4	아세안 (10개국)	2005.2.	2006.8. (상품무역협정)	2007.6. (상품무역협정)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2007.11. (서비스협정)	2009.5. (서비스협정)	
			2009.6. (투자협정)	2009.9. (투자협정)	
5	인도	2006.6.	2009.8.	2010.1.	BRICs 국가, 거대시장
6	EU (27개국)	2007.5.	2010.10.6.	2011.7.1.(잠정) 2015.12.13.(전체) 2011.7.1. 이래 만 4년 5개월간 잠정적용	거대 선진경제권
7	페루	2009.3.	2011.3.21.	2011.8.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8	미국	2006.6.	2007.6.	2012.3.15.	세계 최대경제권 (GDP 기준)
		2018.1. (개정협상)	2018.9.24. (개정협상)	2019.1.1. (개정 의정서)	
9	튀르키예	2010.4.	2012.8.1. (기본협정-상품무 역협정)	2013.5.1. (기본협정-상품무역 협정)	유럽-중아시아 진출 교두보
			2015.5.26. (서비스-투자협정)	2018.8.1. (서비스-투자협정)	
10	호주	2009.5.	2014.4.8.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11	캐나다	2005.7.	2014.9.22.	2015.1.1.	북미 선진시장
12	중국	2012.5.	2015.6.1.	2015.12.20.	우리의 제1 교역국 (2022년 기준)
13	뉴질랜드	2009.6.	2015.3.23.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14	베트남	2012.8.	2015.5.5.	2015.12.20.	우리의 제5위

- 1)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

연번	상대국	추진 현황			의의
		협상개시	서명	발효	
					투자대상국 (2019년 기준)
15	콜롬비아	2009.12.	2013.2.21.	2016.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16	중미 (5개국)	2015.6.	2018.2.21.	2021.3.1. 전체발효	중미 신시장 진출
17	영국	2017.2.	2019.8.22.	2021.1.1.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18	RCEP	2012.11.	2020.11.25.	2022.2.1.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19	이스라엘	2016.5.	2021.5.12.	2022.12.1.	창업국가 성장모델
20	캄보디아	2020.7.	2021.10.26.	2022.12.1.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21	인도네시아	2019.2.	2020.12.18.	2023.1.1.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 자료 : 관세청 FTA 포털, <발효된 FTA 체결현황>

□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일반적으로 공산품 및 서비스 수출을 확대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값싼 농수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농어업생산 감소와 이로 인한 농어업인 소득감소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 현행법상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5 여야정 합의’(15. 11. 30.)에 따라 무역이득공유 제2)의 대안으로 2017년 3월부터 도입된 기금으로, 정부외의 자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조성되고 있음.

2)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수혜를 받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환수, 농어업 등 피해산업을 지원하자는 제도.

【한·중FTA 여야정 합의문 관련내용】

1.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동 기금은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동 재단 사업에 준하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즉시 개정한다. 만일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개요 】

- (추진배경) 한·중 FTA 비준 동의 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여야정합의('15.11.30)에 의해 도입('17.3.30)
- (조성목표)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현물 등으로 매년 1천억원 조성, 10년간 1조원 조성 목표
- (조성재원 및 용도)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의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 (운영조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17.3.30. 출범)

- (인센티브) 세제혜택(법인세액 공제 등), 동반성장지수·평가 반영, 홍보
- (조성현황) '17년~'24.10월 현재까지 상생기금 출연액 중 공기업·공공기관의 출연액은 60.6%, 민간기업의 출연액은 39.1% 차지
- (기금사업 집행현황): 926개 사업, 2,085.5억원
 - 농어촌 교육·장학사업(96개 사업, 10,823백만원)
 -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208개 사업, 37,151,백만원)
 -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419개 사업, 102,663백만원)
 -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사업(193개 사업, 41,238백만원)
 - 농협 발행 상품권 사업(9개 사업, 16,653백만원)
 - 홍보·공동사업 운용관리(1개 사업, 20백만원)

※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024.12.6. 제출)

□ 한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이 상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제혜택³⁾ 및 동반지수 성장평가 가점부여의 인센티브가 있음.

【 상생기금 출연에 따른 효과 】

구 분	효과	참고
세제혜택	○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 출연금의 10%를 법인세 공제 ○ 출연금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공제 항목에 포함	※비교)사랑의열매 ○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 50% 한도로 손금인정
동반지수 성장평가 및 지수	○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 반영 * '24 총 100점 중 최대 3.0점 ○ '19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 '24 실적평가 2.0~3.0점	※비교)대·중소기업상생기금 ○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 반영 * '24 총 100점 중 최대 4.5점 ○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 '24 실적평가 최대 3.0점

3) 농림축산식품부는 기금 출연에 따른 세금감면액 총액은 알기 어려운 것으로 답변함('24.12.6.)

□ 2017년 3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립 이후 2024년 10월까지 조성된 출연 현황은 2,497억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을 조성하여 10년간 1조원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하였음을 감안할 때 8년간 (2017~2024) 총 조성목표액의 약 25%가 조성됨.

□ 전체 조성액 2,497억원 중 60.6%는 공공기관, 39.1%는 민간기업, 0.3%는 개인 및 단체가 출연하여, 민간기업의 참여율은 낮은 편임.

【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

(단위: 백만원, 개 / '24.10.31.기준)

구 분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및 단체		합 계
	참여	금액	참여	금액	참여	금액	
2017	14	30,625,000 (98.9%)	2	300,900 (1.0%)	68	38,600 (0.1%)	30,964,500 (100.0%)
2018	30	17,930,304 (77.4%)	9	5,215,000 (22.5%)	27	13,500 (0.1%)	23,158,804 (100.0%)
2019	43	17,543,314 (77.6%)	26	5,045,190 (22.3%)	9	5,000 (0.1%)	22,593,504 (100.0%)
2020	65	20,434,868 (54.4%)	76	17,053,056 (45.3%)	16	107,411 (0.3%)	37,595,335 (100.0%)
2021	94	25,738,841 (56.5%)	70	19,683,671 (43.2%)	5	102,607 (0.3%)	45,525,119 (100.0%)
2022	102	16,398,470 (46.3%)	111	18,791,962 (53.1%)	7	226,200 (0.6%)	35,416,632 (100.0%)
2023	117	13,387,204 (43.9%)	103	16,941,254 (55.6%)	5	166,717 (0.5%)	30,495,175 (100.0%)
2024.10	89	9,097,910 (45.6%)	66	10,765,696 (54.0%)	8	80,500 (0.4%)	19,944,106 (100.0%)
다년협약 잔여분	2	270,000 (6.7%)	2	3,780,000 (93.3%)	-	- (0.0%)	4,050,000 (100.0%)
총 계 (중복제외)	556 (134)	151,425,911	465 (211)	97,576,729	145 (133)	740,535	249,743,175

※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024.12.6. 제출)

□ 한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으로는 농어촌지역 개발 및 활성화 관련 419개 사업에 1,027억 원을 집행(49.2%)하고,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 관련 193개 사업에 412억 원을 집행(19.8%)하는 등 누적 926개 사업에 2,086억 원을 집행하였음.

【 연도별 사업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개 / '24.10.31.기준)

구 분	년도	교육·장학 (제1호)	복지증진 (제2호)	지역개발 (제3호)	공동협력 (제4호)	상품권 (제5호)	운영·관리 (제6호)	합계
지원 금액	2017	500	192	344	501	-	-	1,537
	2018	1,237	4,003	16,688	8,459	3	-	30,389
	2019	1,292	2,921	10,014	3,360	359	-	17,947
	2020	384	5,187	14,805	5,325	1,811	-	27,512
	2021	1,644	6,227	12,621	4,646	3,807	-	28,945
	2022	554	5,464	15,440	5,661	4,211	-	31,330
	2023	4,265	6,027	15,375	8,562	3,252	20	37,501
	2024.10	948	7,130	17,376	4,725	3,210	-	33,389
	합 계	10,824 (5.2%)	37,151 (17.8%)	102,663 (49.2%)	41,239 (19.8%)	16,653 (8.0%)	20 (0.0%)	208,550 (100.0%)
지원 과제	2017	2	2	3	2	-	-	9
	2018	8	11	29	19	1	-	68
	2019	12	21	36	16	2	-	87
	2020	10	28	58	28	1	-	125
	2021	15	31	76	33	2	-	157
	2022	13	30	65	32	1	-	141
	2023	22	46	63	41	1	1	174
	2024.10	14	39	89	22	1	-	165
	합 계	96 (10.4%)	208 (22.5%)	419 (45.2%)	193 (20.8%)	9 (1.1%)	1 (0.1%)	926 (100.0%)

※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024.12.6. 제출)

- 현행법에 따르면 상생기금은 정부 이외의 자의 자발적 출연에 의하여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 동 기금 도입 당시 목표한 매년 1,000억원의 기금 출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연평균 약 322억원 수준의 기금만이 적립되고 있어 농어업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다년	계
목표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7,000
조성액	309.7	231.6	225.9	375.9	455.3	354.2	304.9	71.3	2,328.8
비율	30.9%	23.1%	22.6%	37.6%	45.5%	35.4%	30.5%	-	32.2%

※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024.12.6. 제출)

- 이에 개정안은 협정 체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매출액의 0.005%’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당초 목표한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농어촌 및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실효적으로 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에서 매출액의 0.005%로 하려는 것은 재계서열 1위~10위 그룹이 지난 8년간 출연한 금액이 작년 총매출액 대비 0.003% 수준인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⁴⁾.

4) [2024 국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저조..(푸드투데이, 24.9.24)

□ 다만, 개정안에 따른 법문만으로는 출연금 조성 노력의무가 부과되는 ‘수혜기업’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수혜기업의 선정기준 및 그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매출액의 0.005%이라는 출연 기준액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수혜기업의 출연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고, 출연하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유사 의안(제21대, 김승남의원안)과 차별화 됨.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수혜기업에 출연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초 상생기금 도입 당시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2.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목표액 보다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입(안 제18조2의제4항 및 제5항)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현행법은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및 물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조성액이 목표액 보다 작을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기금 조성목표액 대비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① 직전 회계연도 관세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고, ② 수혜기업에게 출연 협조 등을 요청하는 조치를 하고 이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③ 상생기금은 <u>정부</u>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제18조의2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④ ----- <u>정부와 정부</u> ----- -----.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u>필요한</u>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 ----- ----- ----- <u>다음 각</u> <u>호에 따른 필요한</u> ----- -----.

현행	개정안
<신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나. 관계 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5년 여야정 합의 및 제도의 도입 취지 등과 부합하지 않고, 각종 재정규율 적용을 받게 되어 기금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기존 FTA기금과의 중복, 기업의 출연 감소 등이 우려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2)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통상조약법 제13조에 근거해 국내 보완 대책을 실시 중이고, FTA 이행지원기금 조성 등을 통해 농어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직접 출연은 기존 재정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및 상생협력 분위기 저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검토의견

1) 개정 필요성

- ☐ 현행법에 따르면 상생기금은 정부 이외의 자의 자발적 출연에 의하여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 동 기금 도입 당시 목표한 매년 1,000억원의 기금 출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연평균 약 322억원 수준의 기금만이 적립되고 있어 농어업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 ☐ 이에 개정안은 상생기금에 대하여 민간 뿐 아니라 정부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8조의2제4항), 상생기금 목표액에 출연금이 미달하는 경우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일반회계로 전입하도록 의무화(안 제18조제5항제1호) 하려는 것임.
- ☐ 현재 상생기금 조달 금액이 매년 목표액에 미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연도 마다 조성액 편차도 발생하고 있어, 재원조달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다년	계
목표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7,000
조성액	309.7	231.6	225.9	375.9	455.3	354.2	304.9	71.3	2,328.8
비율	30.9%	23.1%	22.6%	37.6%	45.5%	35.4%	30.5%	-	32.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2024.12.6. 제출)

□ 이에 따라 상생기금사업의 규모 및 범위가 제한되고, 다년도·중
장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상생기금에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상생기금의 안정적 운영 및 원활한 상생협력사업 추진이 가
능해져,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이라는 당초 동 제도 도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당초 상생기금 도입시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하기로 여야정이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에서
상생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일반회계에서 상생기금으로 관세징수액의 1%를 전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농업분야 예산의 전반적 확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그 구분만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출연
목표액 미달성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다는 점이 오히려 민간의
자율적 출연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상생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 마련은 상생기금의 안정
적인 운영 필요성,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 취지, 정

부 지원이 상생기금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개정안 수용시 검토사항

- 한편, 개정안이 반영되어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 발생하면, 상생기금은 순수한 민간기금이 아닌 국가기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 「국가회계법」에 따른 기금결산 등 관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기금 설치·운영 주체 역시 재단이 아닌 국가, 정부 또는 주무부처의 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상생기금사업 추진시에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금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정부의 기금집행 시 적용되는 각종 규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반회계에서의 전입으로 상생기금이 국가기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FTA기금”)”과의

차별화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FTA기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비교 】

구분	FTA기금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도입 배경 및 목적	· 한·칠레 FTA('04.4.1 발효)를 이행함에 있어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	· 한중FTA 여야정합의('15.11.30) ·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도입 시기	· 2004.4월	· 2017.3월
법적 근거	· 「FTA농어업법」 제13조	· 「FTA농어업법」 제18조의2
조성목표	· 한·칠레 FTA 발효일부터 7년간 총 1조 2천억원	· 매년 1천억원, 10년간 총 1조원
기금의 재원	1. <u>정부의 출연금</u>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농특회계에 따른 전입금	· <u>정부 외의 자가 출연</u> 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
기금의 용도	1.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3.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 4.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5.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 6. 제1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제22조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8.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1. 농어업인 자녀, 농어업계 학교, 농어촌지역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 증진 등 농어촌 주민 복지증진 사업 3. 정주여건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간 상호 이익증진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 5.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6. 상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관리주체	· 농림축산식품부(aT에 위탁)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2024.12.6. 제출)

□ 아울러 개정안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액을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연평균('19~'23) 815억 6,000만원 수준으로,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관세징수액 추이 】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관세징수액	78,821	70,585	82,270	103,241	72,883

※자료: e-나라지표(관세청 소관 세수실적)

3. 재단 등에 수혜기업별 할당액을 정해 출연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안 제18조의2제5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현행법은 상생기금 조성액이 목표액 대비 부족한 경우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농해수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① 상생기금 조성액이 목표액에 부족한 경우 정부가 수혜기업에게 출연협조 등을 요청 하도록 하고, ② 재단·수혜기업 대표단체 등에게 수혜기업별 출연 할당액을 정해 출연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 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18조의2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⑤ ----- ----- -----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 ----- 1.(생략) 2. 수혜기업에게 상생기금 출연 협조 및 지원 요청. 이 경우 정부는 재단에 출연 협조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⑧ 재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혜기업 대표 단체 또는 협회는 상생기금의 연도별 목표액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개정안
	수혜기업별 출연 할당액을 정하여 출연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은 현행 기부금품법과 충돌되며, 기부금품법이 개정되더라도 재단 등의 기관이 수혜기업별 출연 할당액까지 정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남용 우려, 준조세 논란, 암묵적 기부 강요에 따른 기업의 출연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이 목표액 대비 저조하여 농어촌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기금 조성 목표액 미달시 정부가 수혜기업에 출연협조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재단 등이 수혜기업별로 할당하여 출연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기업별 할당액을 정하여 출연 요청하는 경우 보다 원활한 출연금 조성이 가능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기업별 금액을 정하여 할당하는 방식으로 모집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준조세 논란 역시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 「기부금품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① 기금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접수’할 수 없지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부금품 관련 규정】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립한 법인으로,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이 금지되는 법인에 해당함.

즉, 현행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자발적인 기부금에 대한 ‘접수’는 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모집’은 불가능하고, 현행법과 현행 기부금품법 체계 내에서는 할당액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출연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모집 및 접수 현황】

구분	모집	접수
개념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특정인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을 받아들이는 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원칙) 모집 불가 (예외) 「기부금품법」 제3조에 명시되는 경우 모집 가능	(원칙) 접수 불가 (예외) 개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접수 가능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모집불가 「기부금품법」상 근거 없음	접수가능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상 근거 있음.

□ 이에 동 개정안과 함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향후 해당 법안의 심사 경과 추이를 고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안, 제2204892호)】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1. ~ 1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u><신 설></u>	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한편, 개정안에 따른 민간기업 출연 할당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현재 10%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50%로 상향하면서, 조세특례의 일몰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향후 해당 법안의 처리여부 및 처리시기 등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안, 제2204884호)】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u>100분의 10</u> 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 <u>2030년</u> ----- ----- ----- <u>100분의 10</u> (제2호의 경우에는 <u>100분의 50</u>)----- ----- ----- ----- ----- -----.
1. ~ 4. (생략) ② ~ ⑧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4. 매년 1천억원 조성 목표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법률 제14528호 부칙 제2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현행법은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를 매년 1천억원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의2제4항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 후 10년(∼'27.1.16까지)으로 하고 있음.

☐ 개정안은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액을 매년 1천억 씩 20년간으로 연장하려는 취지임.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 칙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u>10년간</u>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제5항의----- <u>20년간</u> -----.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총 조성 목표액이 2조원으로 증가하므로 사회적 합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출연금 연간목표액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이는 현재 출연금 조성이 당초 목표액에 미달하고, 여전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농어촌·농어업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당초 ‘2015년 여야정 합의’시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를 조성할 것을 합의하였는 바, 조성기간 연장 및 기금조성액 증가는 당초 합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여야정 합의가 필요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기금 조성 목표액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조성목표액도 당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민간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과 같이 연간 1,000억원의 기금 조성 목표액의 유효기간을 법 개정 이후 20년으로 연장할 경우, 해당 조항의 당초 시행

일인 2017년 1월 19일부터 2037년 1월 19일까지 연장되는지, 아니면 개정안 시행일(2025. 1. 1.)이후 추가적으로 20년이 연장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또한 해당 부칙 제2조의 해석 여하에 따라 조성 목표액 총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7